

# 2017. 12월 국별 청렴 T/F 교육자료

##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

### QR코드로 익명신고하세요!

**신고대상**

- 공공 유용 및 횡령 행위
-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 행위
-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 신고제외대상: 업무 불만족, 불친절 등 일반적인 민원성 제보

**신고방법**

PC: 강북구청 홈 > 익명신고 배너 > 신고하기  
레드위슬 홈 > 조직명 검색 > 신고하기

스마트폰: QR코드 열 > QR코드 스캔 > 신고하기

**처리방법**

신고내용은 익명으로 레드위슬 헬프라인시스템에 연결되어 IP추적, 조회 등이 불가능합니다. 신고서는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며 감사관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신고자는 레드위슬 홈페이지 [www.redwhistle.org]에서 처리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강북구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



강 북 구  
(감사담당관)

---

공직자가 궁금해하는

---

청탁금지법

10가지

오 해



국민권익위원회

- 0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 02 공직자의 배우자는 회사에서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 03 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인가요?
- 04 직무와 관계없는 금품도 받으면 안되나요?
- 05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허용되나요?
- 06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제한, 하루 기준인가요?
- 07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8만원까지인가요?
- 08 선물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 09 친목모임에서 주는 경조사비도 받아선 안되나요?
- 10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오해1.

#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ex) 공직자 → 일반인 (적용 ×)  
공직자 → 공직자 (적용 ○)



## 오해 2.

# 공직자의 배우자는 회사에서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아도 됩니다.

ex) 건강검진 혜택, 명절선물 등



# 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인가요?

승진, 처우 등 단순한 상담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요구가 부정청탁입니다.

인사고충 상담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도 허용



## 오해 4.

# 직무와 관계없는 금품도 받으면 안되나요?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은  
1회 5만원 이상(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오해 5.

#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허용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 인정 O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 인정 X



## 오해 6.

#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제한, 하루 기준인가요?

식사는 1회가 기준입니다.  
단, 시간과 장소가 가깝게 이어질 때는  
합산 3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ex) 1차 식사, 2차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



## 오해 7.

#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8만원까지인가요?

식사자리에서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는 3만원, 전체 총액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식사 4만원, 선물 1만원 (허용 x)



## 오해 8.

# 선물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선물을 반환하였더라도,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경위, 금품종류, 반환여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친목모임에서 주는 경조사비도 받아선 안되나요?

공직자가 회비를 납부해 온  
친목모임의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 직원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등



#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외부강의에 해당되면,  
사례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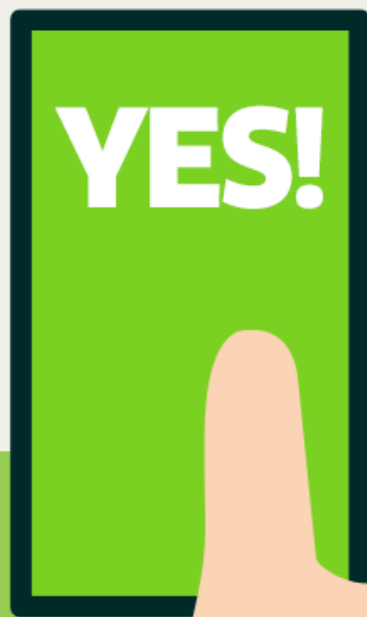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 편** ...

**청탁금지법  
허용 사례  
1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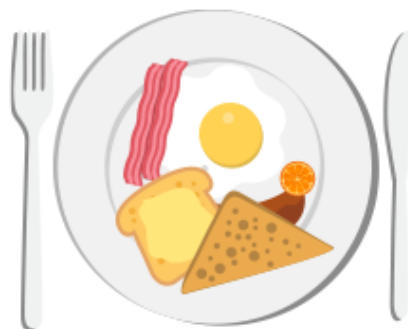
## Ⅰ 공직자-허용편 Ⅰ

- 01 업무를 겸한 오찬간담회 시 3만원 내 식사는 허용되나요?
- 02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넘는 식사도 가능한가요?
- 03 바자회 개최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모금 할 수 있나요?
- 04 도서 산간지역 출장 시, 현지에서 차량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 05 외국정부의 국제행사 초청으로 항공권, 숙박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 06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업체의 시제품은 받아도 되나요?
- 07 국장이 직원 격려를 위해 회식할 때 1인당 3만원 넘게 사줘도 되나요?
- 08 결혼이나 돌잔치 후, 상사나 동료들에게 떡을 돌려도 되나요?
- 09 같은 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했을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받아도 되나요?
- 10 일정기간 여러 번 참석하는 외부강의를 일괄신고해도 되나요?



# 업무를 겸한 오찬간담회 시 3만원 내 식사는 허용되나요?

통상적인 업무협이나 회의, 간담회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3만원까지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 인정 0**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 인정 X**



#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넘는 식사도 가능한가요?

공직자가 자신의 식사비를 각자 낸다면  
3만원이 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 바자회 개최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모금** 할 수 있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은 가능합니다.



# 도서 산간지역 출장 시, **현지에서 차량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직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공받는 최소한의 차량지원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정부의 국제행사 초청으로 항공권, 숙박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초청되어 현지에서 제공받는 항공, 숙박,  
음식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업체의 시제품은 받아도 되나요?

상품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시제품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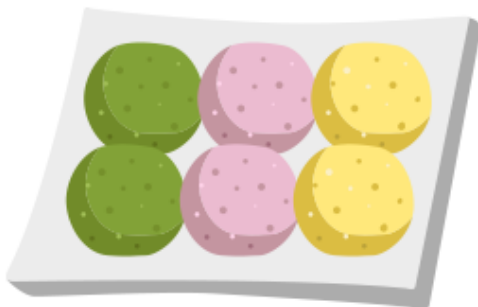
# 국장이 직원 격려를 위해 회식할 때 1인당 3만원 넘게 사줘도 되나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위로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결혼이나 돌잔치 후, 상사나 동료들에게 떡을 돌려도 되나요?

결혼이나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소속 직원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다른 주제로 강의를 했을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받아도 되나요?

같은 날 이루어진 강의라도  
주제와 대상이 다르면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여러 번 참석하는 외부강의를 일괄신고해도 되나요?

강의 특성상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인 경우,  
해당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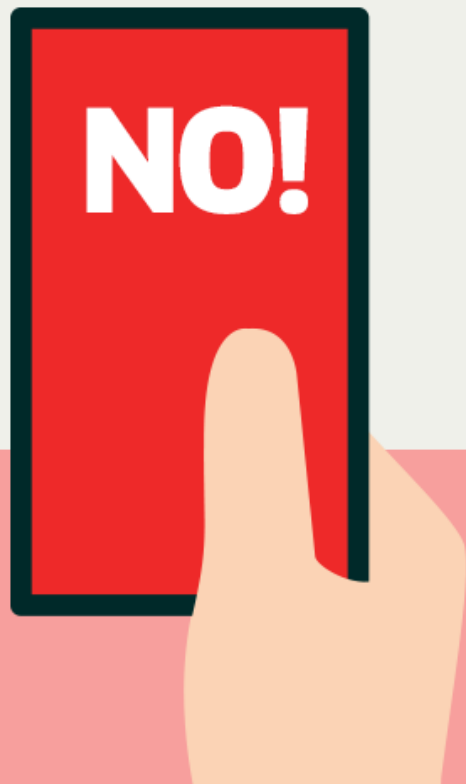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 편** ...

# 청탁금지법 금지사례 10가지



## 공직자-금지편

- 01 감사기간 중입니다. 피감기관 직원에게 음식물 접대를 받아도 되나요?
- 02 논문심사 중입니다. 심사대상 대학원생에게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 03 인사평정 기간입니다. 하급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 04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 05 퇴직 예정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각출한 50만원 상당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 06 업무관계자가 골프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선물로 보아도 될까요?
- 07 기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고가의 선물도 홍보기념품으로 볼 수 있나요?
- 08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 관광'에 초청받았습니다. 다녀와도 될까요?
- 09 직무 관련 업체가 출장비를 주었습니다. 실비수준인데 받아도 될까요?
- 10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금지사례 01

감사기간 중입니다.  
피감기관 직원에게 **음식물 접대를**  
받아도 되나요?



감사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능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 } **목적 인정 0**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 **목적 인정 X**



금지사례 02

**논문심사 중입니다.** 심사대상  
대학원생에게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심사대상자로부터  
법정 심사료가 아닌 식사 등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로 볼 수 없어 안됩니다.



금지사례 03

**인사평정 기간입니다.**  
**하급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인사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안됩니다.



금지사례 04

#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식사와 선물을 받는 횟수가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



금지사례 05

퇴직 예정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각출한 50만원 상당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상급자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건네는 선물은 5만원까지입니다.  
50만원 상당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사례 06

업무관계자가 골프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선물로 보아도  
될까요?



청탁금지법상

골프접대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상당액만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지사례 07

기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고가의 선물도 홍보기념품으로  
볼 수 있나요?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하여 무조건  
홍보용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작 목적이나  
선물 가액, 수량, 관계 등 고려 필요



금지사례 08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 관광’에 초청받았습니다.  
다녀와도 될까요?



행사 프로그램이  
관광이나 여행 등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금지사례 09

직무 관련 업체가 출장비를  
주었습니다. 실비수준인데  
받아도 될까요?

출장비

직무 관련자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장비, 교통비 등을  
받아서 안됩니다.



금지사례 10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원고료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